

# 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- 54호

##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30일

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

### 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# 2. 제정이유

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충전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,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. 이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내용을 추가함  
(안 제8조)

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
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1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#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5. 26.

발 의 자 : 성보빈·구점득·김남수·김상현·김수혜·김현일  
김혜단·남재욱·박강우·박선애·박해정·백승규  
서명일·서영권·이우완·이원주·이종화·진형익  
최정훈·한상석·한은정·홍용채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충전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,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. 이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내용을 추가함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
- 나. 관계 법령
- 다. 현행 조례

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 
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                     시장은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                      에 적합하게 제작된 충전시설을                    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                     승인받아 설치·운영하려는 자에게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(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                    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**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전기자동차
2.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

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전기자동차

2. 하이브리드자동차

3. 수소전기자동차

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⑩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교통,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

⑪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·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,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에의 범위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■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전기자동차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3. “수소전기자동차”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4. “충전시설”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.
5. “수소연료공급시설”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6. “주차장”이란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활성화계획 수립)** ①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활성화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.

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
3.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4.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



수 있다.

**제5조(구매 지원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 구매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.

1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4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기자동차 중 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」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
2. 규정 제4조제5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전기버스 중 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」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하여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전기버스
3. 규정 제4조제8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수소전기자동차 중 환경부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수소전기자동차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 구매비용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창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등록된 장애인
2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
3. 「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
**제6조(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)** ① 시장은 공용차량을 교체·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. 다만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의 경우는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③ 시가 설립한 출자·출연기관의 장(이하 “출자·출연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출자·출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

소전기자동차 구매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운행에 대한 지원)** 시장은 「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및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2.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3. 「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
4. 시 관내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감면
5. 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
6. 삭제

**제8조(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)** ① 시장은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된 충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설치·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8조의5에 해당하는 시설의 충전시설 설치비에 대한 지원 또는 용자의 알선
2. 영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충전시설 설치부지 제공
3. 충전시설의 충전금액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

② 시장은 「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법 제11조의3에 따라 시가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창원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**제9조(전용주차구획의 설치)** 시장은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(소수점 이하 반올림) 이상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**제10조(인재양성)**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

하고,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,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1조(홍보활동)**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·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(준용)** 제5조, 제8조,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